

보도시점 2025.7.15.(화) 12:00
(2025.7.16.(수) 조간)

배포 2025.7.15.(화) 09:00

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

-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관련 특례 적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특정연구기관*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법령 정비**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
*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(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, 4대 과기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16개 기관)

**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일부개정(24.12.20. 기시행), 시행령 일부개정(25.7.15. 시행)

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*하여,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.

* 모법에서 국유·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관련 절차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, 기존 시행령에 위임했던 국유재산 관련 조항(시행령 제7조 제8조)을 삭제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 확보

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, ①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(토지)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,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(법 제4조제4항), ②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(법 제4조제5항)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·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.

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·시행된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, 이번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법령 정비로,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·운영 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“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”며,

“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윤억 (044-202-4720)
		담당자	사무관	성인제 (044-202-4723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지정브리핑



참고1

특정연구기관 현황 (16개)

※ 시행령 제3조

특정연구기관명	설립·운영 근거법
① 한국과학기술원	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
② 광주과학기술원	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
③ 대구경북과학기술원	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
④ 울산과학기술원	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
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	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」
⑥ 한국원자력의학원	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
⑦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	「원자력안전법」
⑧ 한국연구재단	「한국연구재단법」
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⑩ 한국과학창의재단	「과학기술기본법」
⑪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⑫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⑬ 한국세라믹기술원 ⑭ 한국산업기술시험원	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
⑮ 정보통신산업진흥원	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
⑯ 기초과학연구원	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참고2
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('24.12.20.) 신·구조문대비표

종 전	현 행
<u>제4조(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) ①</u> <u>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</u> <u>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</u> <u>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 <u>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</u> <u>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(無償)</u> <u>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</u>	<u>제4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</u> <u>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) ① 국가</u> <u>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</u> <u>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</u> <u>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</u> <u>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</u> <u>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</u> <u>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</u> <u>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</u> <u>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</u> <u>게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</u> <u>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</u> <u>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</u> <u>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·공</u> <u>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</u> <u>경우에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</u> <u>제35조 및 제46조와 「공유재산</u> <u>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</u> <u>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</u> <u>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</u> <u>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</u> <u>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
② 제1항에 따른 양도·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·양여·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·대부·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·대부·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, 「물품 관리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을 각각 준용한다.

현행	개정
제7조(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)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다. ②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 ④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	<삭 제>
제8조(「국유재산법」의 준용)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	<삭 제>